[별지 제7호] <개정 2016. 12. 6., 2024. 7. 1.>

#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

문서번호 2026. 09. 01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(담당 부서장)

제 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내용을 보고합니다.

붙 임 : 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 1부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우 (인)

| 작 성 자 : 박건희 (부장) |
| --- |
| 전화번호 : 031-342-7868 |

(붙임 1)

#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

## 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| 성 명 (한 자) | 직 위 | 임원 여부 | 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 | 선임일 | 임기 (만료일) | 업무 범위 | 겸직 직위 및 업무 | 주요 경력[1)] | 자격요건 확인결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이광일 (李光一) | 준법감시인 | 상무이사 | 630527 | 2026.09.01 | 2028.08.31 |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 | | 2024.09.01.~2026.08.31. 엘에프자산운용(주) / 준법감시인<br>2021.03~2024.04 솔리크인베스트먼트(주) / 준법감시인<br>2020.01~2020.12 국민은행 / 자점감사 / 부장<br>2019.01~2018.01 국민은행 / 지점장<br>1989.10~1998.12 장기신용은행 / 과장 | 결격사유 없음 |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## 2.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해임(사임)

| 성 명 (한 자) | 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 | 선임일 | 해(사)임일 | 해(사)임사유[1)] | 비 고[2)]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

주 1) 해(사)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#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| 성 명<br>(한 자) | 이광일<br>(李光一) | 직 위 | 준법감시인 |
|---|---|---|---|

| 심 사 항 목 | 심 사 결 과 | 비 고 |
|---|---|---|
| 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<br>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<br>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<br>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| 적정함 | |
| 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 | 적정함 | |
| 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| 적정함 | |

종 합 의 견

준법감시인 선임에 결격사유 없습니다.

2026 년 09월 01일

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이 광 일 (인)

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우 (인)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---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준법감시인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. 다만,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,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#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| 성 명<br>(한 자) | 이광일<br>(李光一) | 직<br>위 | 위험관리책임자 |
|---|---|---|---|

| 심 사 항 목 | 심 사 결 과 | 비 고 |
|---|---|---|
| 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<br>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<br>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<br>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| 적정함 | |
| 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 | 적정함 | |
| 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| 적정함 | |

종 합 의 견

준법감시인 선임에 결격사유 없습니다.

2026 년 09월 01일

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이 광 일 (인)

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우 (인)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---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. 다만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,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